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3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3월 22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영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차별금지(안 제4조)
- 지원사업의 범위 및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금천구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